2020년 거창읍 종합감사 결과

Ⅰ 감사개요

○ 감사기간 : 2020. 6. 15. ~ 6. 19. / 5일간
○ 감사범위 : 2017. 7. 1. ~ 감사일 현재
○ 감사인원 : 감사담당주사 등 8명

Ⅱ 감사결과

1 예산회계분야

1) 회계관계공무원(지출원)지정 부적정

○ 2017. 11. 29. 일부개정 및 시행된「거창군 재무회계 규칙」제3조(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)제1항제5호라목에 따르면 거창읍의 지출원은 회계업무 담당과장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,
○ 2018. 12. 12. 일부개정(2019. 1. 1. 시행)이후 지출원을 읍·면 총무담당으로 지정하도록 개정하였음에도 2019. 1월부터 2020. 6월 감사일 현재까지 부읍장이 지출원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 회계관계공무원(지출원) 지정을 부적정하게 지정하였음.

2) 신용카드 발급, 보관·관리 소홀

○ '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' 등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시에는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·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,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 신용카드별로 부여된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으나,
○ 2017. 7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미작성, 관리공무원 교체 시 지방자치구매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상호 확인 및 비밀번호 변경 미이행

3) 환지 청산금 관리 부적정

○ 2009년 ▼▼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지급하면서, 청산금은 환지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산하여야 하고,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산금을 관할법원에 공탁하여야 함에도 이○○ 등 5명에 대한 청산금 **,***,***원을 2020. 6월 감사일 현재까지 환지 청산금 계좌에 보관해오고 있음.

4) 관외출장여비 집행기준 미준수

○ 관외출장 2건, ***,***원을 지급함에 있어 공용차량을 사용한 출장에 대한 일비 미감액, 교통비 산정, 식비 과다산정 등 「공무원 여비규정」을 미준수

5) 건설공사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기간 산정부적정

○「&&마을 진입로 정비공사」등 7건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합하지 않음에도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서류의 보완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등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.

6)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업무 소홀

○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장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(공제) 가입 여부 및 정기검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표준계약서 기재사항 및 확인사항을 누락한 채로 계약
○ 공사현장에서 임대장비의 안전사고 등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책임한계에 따른 분쟁을 초래할 소지가 있음.

2 건설분야

1) 건설공사 재해예방전문기관 기술지도 확인 소홀

○「@@마을 뒤 세천정비공사」등 2건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제20조 규정에 의거 착공신고 시 상기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 전문기관과의 기술지도 협약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관련서류에 대한 보완요구 없이 처리

2) 건설공사 운반거리 확인 소홀 및 부적정

○ 「%%배수로 및 농로정비공사」 등 3건에 대하여 설계내역과 실제사토장의 사토거리의 차이가 있음에도 계약금액 조정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준공하는 등 공사감독 업무 소홀

3) 건설공사 산업안전관리비 정산업무 소홀

○ 「$$$$ ##공장 진입로 정비공사」 등 9건에 대하여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"사용불가" 내역에 해당되는 "공사안내간판" 등을 감액조정하여야 함에도 감액을 하지 않고 과다 지급

4) 건설공사 폐기물처리 확인 소홀

○ 「00주차장 포장공사」 등 6건에 대하여 준공 시 전자정보처리 시스템, 중량계근표 등 건설폐기물에 대한 적정처리 여부 확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준공서류보완제출 미요구, 건설폐기물 처리 확인업무를 소홀로 *,***천 원을 과다 지급

5) 건설공사 공사감독 및 준공처리 소홀

○ 「☆☆마을 앞들 농로교 설치공사」 강관비계 미설치, 「★★ ◇◇◇ 농로교 정비공사」, 「▲▲▲▲▲▲ 교량정비공사」 부직포 미설치하였음에도 설계변경 등의 조치 없이 준공처리하여 ***천원을 과다 지급하여 공사감독 및 준공처리 업무를 소홀

6) □□ □□□ 배수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

○ 「□□ □□□배수로 정비공사」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작성 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함에도 공사 계약 이후 장비진입불가 등의 사유로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계약해지, 이로 인하여 실시설계 용역비 ***천원 상당의 재정적 손실을 초래

3 세무분야

1) 상속개시에 따른 취득세 과세누락

○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신고·납부방법에 의해서 징수되는 세목이나 신고·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익일부터 제척기간 내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함에도,

○ 상속개시에 따른 취득세 신고 안내문은 발송하였으나 재산세 직권등재 안내문 발송과 신고기한 경과 후 수시부과를 하지 아니하여 상속개시에 따른 취득세 **,***,***원을 누락

2) 주민세(재산분) 과세누락

○ 주민세(재산분)는 신고·납부방법에 의해서 징수되는 세목이나 신고·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익일부터 제척기간 내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함에도,

○ 신고·납부 대상이 되는 연면적 330㎡ 이상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미실시하여 전년 과세대장과 동일하게 운영, 신규 사업장과 신규 사업자 과세대장 미등록으로 주민세(재산분) *,***,***원 누락

3) 재산세 과세대장 관리 소홀

○ 저율분리과세되는 농지의 경우 별도 및 종합합산대상 토지와 세율의 격차가 큰 토지이므로 도시지역 내에서 저율 분리과세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그 이용현황을 조사하는 작업이 정기분 재산세가 부과되기 전까지 완료되어야 하나,

○ 토지의 이용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전년 과세대장과 동일하게 운영하여 실제 이용현황이 농지가 아님에도 불구, 부당하게 저율 분리과세 되도록 재산세 과세대장 관리를 소홀히 함.

4) 지역자원시설세(특정부동산) 중과세 누락

○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축물에 부과되는 조세로 2014. 1 .1. 이후 4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규정을 세분화하여 11층 이상의 대형건축물의 경우 기존 2배 중과에서 3배 중과규정을 신설하였음에도

○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세 대상인 11층 이상 고층건축물 2개소에 대해 과세대장을 2배 중과세로 관리하여 *,***,***원 과세누락

4 복지분야

1) 경로당 운영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소홀

○ 2018년 및 2019년 상·하반기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보조사업 보조금 집행에 관한 검토 및 정산을 하면서 물품대장 미비치, 공사 및 지출 시 현금집행 및 간이영수증 첨부, 체크카드 미사용 등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 소홀

2) 장애인 자동차표지판 관리 업무 소홀

○ 임OO 등 13명의 자동차 표지판을 발급 받은 장애인이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와 동일 생활권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표지를 회수하여 미폐기

○ 이OO의 장애유형은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견서를 첨부하여 장애인 본인용-주차가능 표지로 발급

3) 기초생활수급자 의사무능력(미약)자 급여관리 업무 소홀
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서OO 등 12세대에 대해 의사무능력(미약)자 급여관리자를 지정하거나, 수급자 본인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·사용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 징구 및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7. 4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급여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본인관리 확인서를 징구하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 의사무능력(미약)자의 급여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.

4) 통합사례관리 가구 사후관리 업무 소홀

○ 2017년 7월부터 현재 감사일까지 사례관리 종결자 김OO 등 70명에 대하여 모니터 상담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, 종결 후 9개월 내 2회에 걸쳐 방문상담 실시하여 상담내용을 상담·관리 시스템의 모니터상담관리에 등록하고, 만족도조사도 병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이행

5)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부 관리 소홀

○「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생계·의료수급자 및 등록 장애인에 대하여 1인 월 3매(1매/20ℓ)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군에서 일괄 구입하여 각 읍면으로 배부하고 읍면에서는 해당 대상자에게 직접 또는 마을이장 등을 통해 배부 후 미수령분에서는 환수하여 관련 대장을 구비하여 기록을 유지 하도록 하고 있으나,

○ 2017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마을이장에게 배부된 종량제 봉투 중 미수령된 355명, 총 3,078매 미환수

5 주민·산업분야

1) 주민등록 전입신고 사후확인서 확인 소홀

○ 「주민등록법」등에 따르면 전입신고가 있으면 관할 이장이 전입자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담당자가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7년 7월 1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1,704건의 사후확인서에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확인이나 사실조사 없이 관할 이장과 담당자의 서명 또는 날인만 하여 보관하는 등 전입신고 사후확인 업무를 소홀히 함.

2)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

○ 2017년 7월 1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관련 규정 및 편람에 과태료 금액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에 맞지 않게 10건, ***천원의 과태료를 오부과

○ 과태료 부과는 부읍장 전결사항임에도 감사기간 중 총 90건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별도의 내부결재 없이 부과·수납 처리

3) 농지전용 용지 밭농업 고정직접직불금 지급 부적정

○ 밭농업직접지불제사업은「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및 같은 법 시행령·시행규칙, '쌀·밭·조건불리지불제 사업시행 지침(농림축산식품부)'에 의하면「농지법」제34조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(농지전용허가·신고·협의가 의제되는 경우

포함) 직불금 지급대상 제외농지 규정하고 있음에도

○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농지전용허가 등으로 직불금 지급대상 제외농지 29필지에 대해 *,***,***원을 부적정하게 지급

4) 농지원부 관리 소홀

○ 「농지법」 및 '농지원부 업무지침 및 시스템 사용요령'에 따라 읍장은 연 1회 이상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정리 하여야 함에도

○ 9필지, 8농가 농지전용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 미정비

6 기타분야

1) 청사 보안 관리 소홀

○ 2020. 6월 감사일 현재까지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여 청사보안 관리를 하면서 총 **매의 보안카드가 등록되었음에도 실제 보유 중인 카드는 **매로 **매의 보안카드의 분실 시점, 분실 사유 등을 파악할 수 없었으며,

○ 특히, ■■창고의 경우 2018. 7월 담당자의 관리소홀로 카드가 분실 되어 추가발급을 하면서도 이에 대한 소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 청사 보안을 소홀히 함.

2) 기간제 근로자 산재보험 미가입

○ 근로자의 재해 발생 시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함에도 "도로변 풀베기작업"등 **건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기간제 근로자를 사역하고도 "산업재해보상보험"에 가입하지 않아 근로자의 안전을 소홀히 함.

3) 민방위 대원명부 송부 및 편성사실 등 통보업무 소홀

○ 2019년, 2020년 민방위대 편성 업무를 추진하면서「민방위기본법」 등 관련법규에 따른 민방위대 편성결과 대원명부 등을 통·리 민방위 대장에게 송부하지 않았으며, 소속 민방위대원에게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리지 않는 등 민방위대 편성 업무 소홀

4)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조치사항 미이행

○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·징수 업무를 처리하면서, 2017년 7월 1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거창경찰서를 비롯한 도로교통법 관리기관으로부터 총 **건의 자동차관리법 위반(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) 적발사항을 통보받은 바 있음에도 그 중 **건의 통보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처분사항 미이행

5)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절차 미준수

○ 2017년 7월 1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 과태료를 부과하면서,

- 과태료 부과, 체납 및 압류 등의 처분 시 내부결재 또는 공문발송 없이 부과 **건, 체납 **건, 총 **건을 처분
- 과태료 처분은 처분의 당사자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며, 반송된 우편물은 공고를 통하여 처분이 도달하도록 하여야 다음 절차의 진행에 효력이 발생함에도 **건의 처분에 대하여 공시송달 미이행
- 윤○○의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에 따른 검토는 처분 행정청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, 이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인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등 관련 규정 적용 부적정